
수도중단방침

목적

이 방침에서 통지서, 수수료 부과, 서비스 중단 등의 체납계정의 수금을 위한 아비널 공공기업 청구부서의 행정조치를 정합니다. 이 방침은 시의 웹사이트에서 대중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은 이 방침의 약관에 따라 미납으로 인한 수도서비스의 종료를 피하는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시에 (559) 386-5766으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고객은 시의 공공웹사이트에 www.cityofavenal.com에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방침

준수:

이 방침은 상원법안으로 제정되고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16900 등으로 제정된 바에 따라 캘리포니아법 SB998 (2018)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납계정:

아비널 시정부법으로 수도청구기간을 월단위로 정하였으며 요금납부일은 서비스 공급한 달부터 다음달 1일이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 다음달 1일까지(혹은 이튿날 영업일)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요금이 체납으로 간주됩니다. (아비널 시정부법)

체납계정의 수금을 위해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1. 소액 계정:** 고지서에서 \$20 이하인 잔액은 이월되고 추가 수금조치없이 다음 청구기간에 합산합니다.
- 2. 체납 통지서:** 청구기간이 지나고 다음달 1일 저녁 4시30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고지서에 만기일과 연체료가또렷하게 나오게 됩니다. 고지서가 체납된 후, 수도국은 고지서납부에 책임진 개인이나 단체에게(이하 "고객"으로 부름) 수도서비스는 60일 이후 중단되는 사실이 나온 체납통지서를 보내야합니다. 계정에 지정된 우편주소로 체납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시 공과금청구부서는 고객이 최근 알려오지 않은 연락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수금일정설명.** 이 방침에서 증거자료A로 첨부된 것은 수금과/혹은 서비스 중단을 위한 일정과 절차의 설명입니다. ("수금일정설명") 설명은 이 방침을 대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만, 방침이 시법과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16900 등을 준수하는 의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 4. 첫번째 중단 통지서:** 고객의 납부금이 최소한 60일동안 체납될 때까지 시는 미납으로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시는 고객에게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약 30일 전까지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7영업일 전에 첫번째 중단통지서를 보내야합니다. 계정에 지정된 우편주소로 첫번째 중단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의 주소가 우편주소와 다른 경우, 서비스 주소로 "입주자" 앞으로 두번째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첫번째 중단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 체납 금액
- 서비스 종료를 피하기 위한 요금의 납부일이나 납부 약정 체결일
- 분할상환약정을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 고지서를 분쟁하고 항소하는 절차의 설명
- 시의 수금 방침에 대한 시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링크

- a. 개별 계량기 주택의 주거용 세입자/입주자를 위한 통지서

수도서비스가 중단되기 최소한 십일 전에, 시정부는 수도서비스의 계정이 체납되고 서비스가 종료되는 사실을 입주자에게 통지서로 알리는 성실한 노력을 할 것이다. 통지서에서 세입자/입주자는 그 주소의 수도서비스에 대한 후속 요금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한 체납계정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록상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체납계정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면제받으려면, 세입자/입주자는 임대계약서의 형태로 임대증명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b. 매스터 계량기로 공급하는 다세대주택의 세입자/입주자를 위한 통지서

수도서비스가 중단되기 최소한 십일 전에, 시정부는 수도서비스 계정이 체납되고 서비스가 종료되는 사실을 주택의 문에 거는 통지서로 입주자에게 알리는 성실한 노력을 할 것이다. 통지서에서 세입자/입주자는 매스터 계량기로 공급하는 주소의 수도서비스에 대한 후속 요금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한 체납계정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기록상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준다. 만일 입주자 한 명 이상이 시가 만족할만큼 수도서비스의 후속요금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용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경우, 혹은 시에서 서비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종료하는 물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5. 편의상 전화: 미납으로 수도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시는 고객에게 통지하는 합당하고 성실한 노력을 할 것이다. 통지 방식은 전화가 된다. 편의상 전화는 온전히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시가 통지서를 보내지 않거나 고객이 통지서를 받지 않는 점으로 미납하거나 중단의 연기가 용납될만한 이유로 성립되지 않는다.

6. 최종 중단 통지서: 상환납부약정의 약관을 60일 이상 준수하지 않거나 현재 주거용 서비스요금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 중단통지서가 발급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최종 중단통지서는 서비스를 중단일로부터 적어도 5일 전에 건물에 문고리 형태로 전달되어야 한다.

7. 별도납부약정 / 납부시간연장: 정상납부기간에 수도서비스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고객은 중단을 항소할 수 있고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별도납부약정과/혹은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116910에 따라, 다음 세가지 조건이 전부 부합되면, 별도납부약정과/혹은 납부기간 연장이 승인될 것이다.

- 건강상태 - 수도서비스 중단으로 체납 계정으로 주민의(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 생명이 위험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생긴다고 주치의사가 문서로 인증한다.
- 경제적 불능 - 고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하거나 메디칼이나 캘웁스 등 정부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납부약정. - 고객은 시가 제안한 납부약정에 동의한다. 납부약정은 임시 납부연기나 분할상환약정을 포함한다.고객이 납부기한에 갚을 수 있는 증명된 능력을 보여주면 시가 임시 납부연기를 제공하게 된다. 다음 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납부약정은 분할상환약정으로 간주될 것이며, 최대한 12개월까지 정하며(시의 재량), 문서로 하고 고객이 서명해야 한다. 분할상환

납부금은 고객의 일반고지서와 합쳐지고 납부일을 따르게 된다. 고객은 분할상환약정의 약관을 준수해야하고 후속 청구기간에 요금이 누적되면서 현상유지를 해야한다. 고객은 분할상환약정에 따라 체납요금을 납부하면서 후속 미납요금에 대해 추가로 분할상환을 요청하지 못한다.

만일 위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116906(a)에 따라서, 정상납부기간에 수도서비스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고객은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별도납부약정과/혹은 납부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약정은 재량에 따르며, 항소에 달려있다. 만일 고객이 별도납부약정을 요청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시는 미납으로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다. 다음 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납부약정은 분할상환약정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문서로 고객이 서명해야 한다. 이 문단의 분할상환약정에서 고객은 서명할 때 연체료 등 미납잔액의 이십(20)퍼센트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문단의 분할상환약정으로 남은 미납잔액을 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분할상환하게 된다. 분할상환금은 고객의 일반고지서와 합쳐지고 일반고지서의 납부일을 따르게 된다. 고객은 분할상환약정의 약관을 준수해야하고 후속 청구기간에 요금이 누적되면서 현상유지를 해야한다. 고객은 분할상환약정에 따라 체납요금을 납부하면서 후속 미납요금에 대해 추가로 분할상환을 요청하지 못한다.

별도납부약정을 동의한 모든 경우, 고객이 분할상환약정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후속 청구기간에 요금이 누적되면서 현상유지를 하지 못하면 별도납부약정이 취소되고 이 방침에 따라 수도서비스가 중단되는 결과가 생긴다. 고객에게 통지서는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적어도 5영업일 전에 건물에 전달하여 문고리 형태로 두게 된다.

8. 중단 최종기한: 별도납부약정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체납된 수도요금과 관련수수료는 중단통지서에 나온 날짜의 오후 4시30분까지 시에서 받아야 한다.

9. 미납으로 인한 수도서비스의 중단: 시는 수도서비스를 끄고 중단하게 되며, 어떤 경우 계량기를 잠그기도 한다.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체납통지서, 첫번째 중단통지서, 편의상 전화, 최종 중단통지서(문고리)로 고객에게 통지하게 된다.

10. 서비스 복구: 미납으로 중단된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지속하려면, 고객은 30달러의 재연결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실행가능하면 서비스를 재연결하는 시도를 할 것이지만, 최소한 서비스 종료의 원인이 된 만기요금과 체납료가 납부된 이후 이튿날 정상영업일 종료시간까지 서비스를 복구할 것이다. 시 공무원이나 수도국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 혹은 수도국 허가없이 켜진 수도서비스는 벌금이나 추가요금,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허가로 서비스를 복구한 결과로 발생한 손상은 고객의 책임이다.

11. 영업시간 이후 서비스의 복구: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서비스 복구를 신청하면 영업시간 이후 60달러의 복구비용이 부가된다. 영업시간 이후 복구비용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일반영업시간 이후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을 것이다.

12. 분쟁의 고지서와 항소: 고객이 고지서나 이 방침의 일부분에 대해 분쟁하는 경우, 시의 시법령에 나온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항소는 문서로 해야하며 체납통지서가 발급되고 31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고객이 수도요금을 분쟁하고 시관리자에게 출석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항소가 대기 중이면 수도서비스는 중단될 수 없다.